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1995년 7월5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거 1993년 3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에 따른 할인율(연리 13.5%)을 적용하고 1993년 4월 1일 이후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전면시행

지난 7월10일 재정경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하도급자보호를 위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확정 의결하고, 이를 위해 율하반기중 건설업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도급한도액, 자산총액

①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02)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민간공사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공사업체의 최대 숙원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이 확정되기까지는 우리 대한설비공사협회(회장 이동락)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이동락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5월26일 개최된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미보중에 따라 원도급자의 부도시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체 연쇄 도산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을 상호 20% 범위내에서 발생한 실손액으로 보증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었다.

③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④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⑤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연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적용하고 매출액은 확인이 가능한 기간동안의 금액을 기초로 추계한 연간매출액을 적용한다.

⑥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합인가능어음

「합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합인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②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
- ③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3) 기간계산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4) 하도급거래 승계

①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기 설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③ 건설관계 법령(건설업법, 전기공사법, 전기통신공사법, 소방법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건설업면허 및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④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면허나 등록의 취소, 지정의 해지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동 처분 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 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과실상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재에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④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⑤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 수급사업자의 책임임을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

■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법2조 제6항)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수리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

는 경우]

※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예시 —

① 자기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된다.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

— 예시 —

① 자동차, 기계, 전자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모형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예시 —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건본

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주문 제작한 것 :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건설자재 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사양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예시 -

① 거래관행상 사양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된다.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 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된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법적용 예시

①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 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 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 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

료입력, 도면입력, BD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④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업의 법적용 예시

①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축설계업의 법적용 예시

①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사양서)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건설위탁의 범위(법 제2조 제8항, 시행령 제1조의 2)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건설업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각 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경우

- 예시 -

①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② 토공사면허만을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일부 시공을 의뢰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건설 등록법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한 기준을 갖춘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법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제21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한 지정업자, 도시가스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관련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및 전기공사업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

면 A와 B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면일보, 유류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공사기간중 A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은 사실

-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②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는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업·도소매업의 경우

①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당연 법적용 대상이 된다. 단,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자는 대기업자로 본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 : 명, 억원)

사 례	원 사업 자		수 급 사 업 자		법적용 해당 여부
	종업원수	매출액 등	종업원수	매출액 등	
① 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0
② 매출액이 2배	60	80	40	35	0
	19	25	10	8	× 1 ₁
③ 종업원수가 2배	40	150	18	80	0
	30	18	13	14	× 1 ₁

주 1, 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 2)

나)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의 경우

①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 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당연법적용 대상이다. 단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자는 대기업자로 본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 명, 억원)

사 례	원 사업 자		수 급 사 업 자		법적용 해당 여부
	종업원수	매출액 등	종업원수	매출액 등	
① 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0
② 매출액이 2배	120	400	70	180	0
	29	37	20	16	× 1」
③ 종업원수가 2배	90	310	40	1600	0
	36	28	21	17	× 1」

주 1」 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 2)

(3) 서면의 교부 및 서류보존(법 제3조, 시행령 제2, 3조)

적법하게 서면을 교부하였거나 서류를 보존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전 교부한 경우
-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구체적인 제조 위탁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다만, 전산으로 발주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고 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 ④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지 않는다.
- ⑤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③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⑥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실행예산 범위내로 시 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⑦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 경제원,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한 저가하도급기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통상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하며,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종래 적용하여 오던 가격을 통상 지급되는 대가로 볼 수 있다.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금중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예시 -

- 총계약금액 : 5,000만원
- 선급금 : 1,000만원 (공사금액의 20%)
- 선급금 지급기일 : 94년 4월 1일 1

(단위 : 명, 억원)

구 분	기성금액		당해 선급금 2」	선급금 기산일 3」	선급금 지연일수 4」	지연 이자 5」
	일자	금액				
1회 기성	94. 4. 30	1,000	200	94. 4. 2	29	4
2회 기성	5. 31	1,000	200	4. 2	60	8
3회 기성	6. 30	1,000	200	4. 2	90	12
4회 기성	7. 31	1,000	200	4. 2	121	17
5회 기성	8. 31	1,000	200	4. 2	152	21
계		5,000	1,000			62

주 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 총 계약금액의 기성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 × 당해기성금 / 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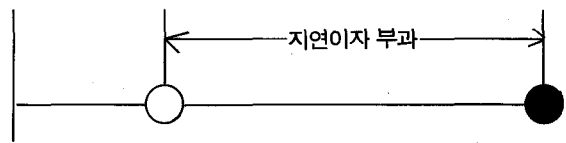
4」 당해선급금 × 25% × 선급금 지연일수 / 365일

다)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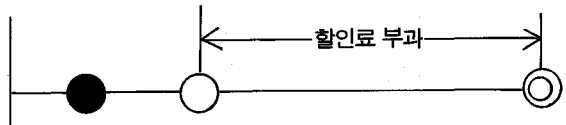
※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하 같다)을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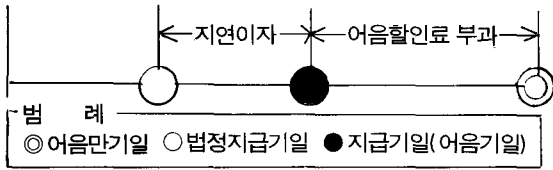
①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②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③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발주자로부터 어음 등으로 수령한 경우]

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등의 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를 부과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등의 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등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과

③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결제 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 지급일까지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불리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 부과

※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기성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선급금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목적물 인수일(또는 기성확정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별도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지급받은 선급금으로부터 이자수입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내국신용장의 개설(법 제7조)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매개설행위로 보지 않는다.

①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원사업자의 부당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가 기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10)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④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⑤ 총액으로 계약한후 제도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이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⑨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⑩ 수출용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

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킨 경우

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정비임차료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차손을 감액하는 행위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②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어음할인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음교부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12)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②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준 경우

(1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청구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개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종정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시 「①」항에 따라 적용한다.

(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제조부문 사건인 경우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인 분쟁
- 나)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에 대한 분쟁
- 다) 건설업자의 제조위탁에 따른 사건중 건설업자의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라)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토건도급한도액 순위 1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와 토목 또는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마)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원사업자인 경우의 분쟁

바)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

사) 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간에 위탁한 사업중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아) 건설업자가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자) 가)~(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①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 ②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 ③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 ④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15)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법 제25조 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16)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 2 제1항)

과태료는 총거래금액중 법 위반 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